

## 2026년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원자력발전 산업의 기반조성 및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용자를 지원하는 「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」 지원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13일  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### < 목 차 >

1. 사업개요
2. 사업 절차 및 평가 기준
3. 사업비 산정기준
4. 기타 유의사항
5.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
6.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
7. 문의처 및 기타

# I

## 사업개요

### 1. 사업 목적

- 원전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시설자금·운전자금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한 원전 산업 기반 조성 및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기반 마련

### 2. 지원내용 및 조건

- (지원규모) 2026년 1,497억원 (융자금)
- (지원대상) 원전 중소·중견기업 중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(법인)
- (대출금리) 분기별 국고채 3년물 평균수익률과 연동되는 대표대출금리에서 1.25%p를 차감한 금리 적용(분기별 변동 금리, 운영규정 별표1 참고)
  - \* 2026년 1분기 기준, 1.75%
- (지원조건)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

구분	지원한도	지원기간	비고
시설자금	최대 100억원	대출기간 포함 최대 10년 (5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)	상환유예 제도없음
운전자금	최대 10억원	대출기간 포함 최대 2년 (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)	

- (대출한도) 기업당 최대 110억 (시설자금 : 100억, 운전자금 10억)
  - \* 기업의 사업계획 상 총 사업비의 중소기업은 90%, 중견기업은 70% 한도 내 자금 지원

### 3. 지원방식

- 9개 취급 은행\*을 통한 간접대출
  - \* IBK기업은행, 경남은행, 국민은행, 부산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한국산업은행, 농협은행

#### < 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절차 >



※ 수행기관 : 한국원자력산업협회 / 전담기관 :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

#### 4. 신청 자격

-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·중견기업으로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(법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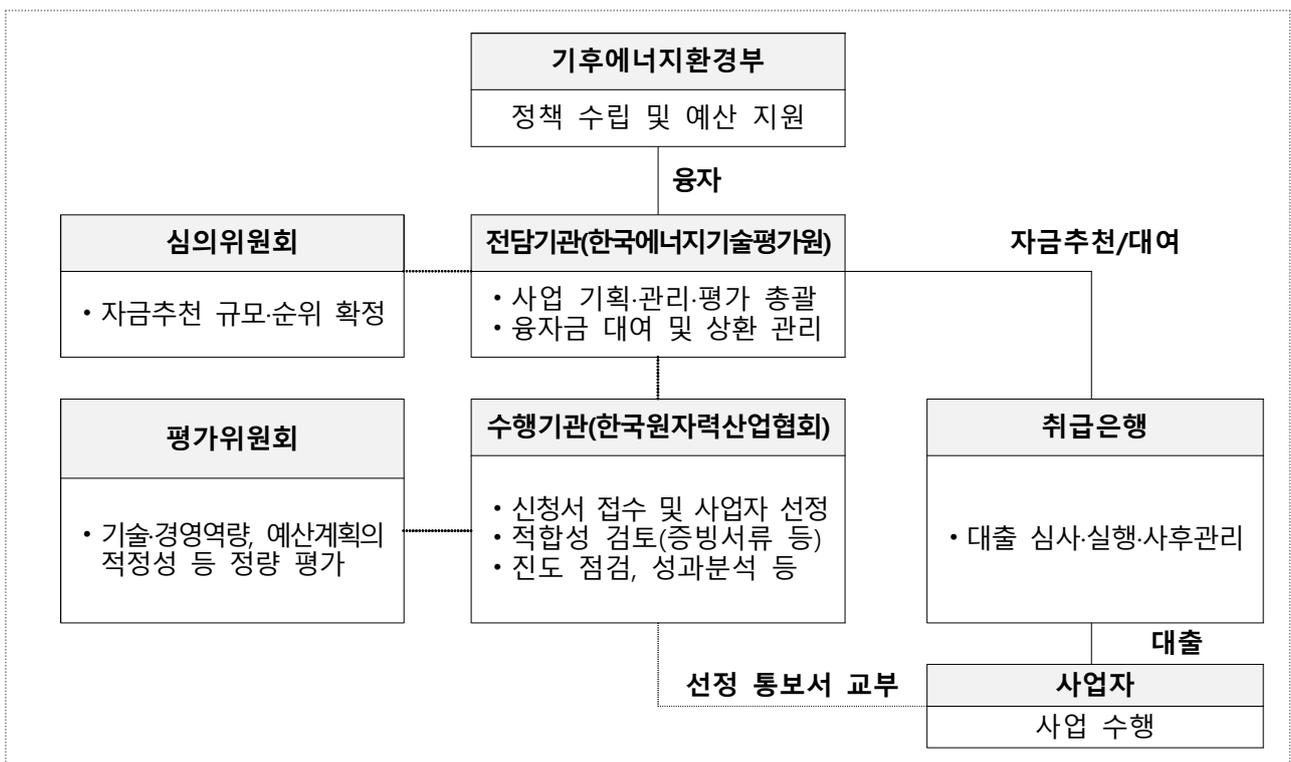
- ①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원자력발전 분야의 연매출 10억원을 달성한 기업
- ②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의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명부에 등록된 기업
- ③ 두산에너지빌리티 주식회사의 원자력 분야 협력기업
- ④ 대한전기협회의 원자력 부문 KEPIC 인증 기업
- 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원전기업 인증을 취득한 기업

- 유형별 증빙서류

- ① 해당년도 연매출 10억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증빙자료
- ②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 분야 유자격 공급자 등록증 (비원자력 분야(양수 및 수력)은 미해당)
- ③ 두산에너지빌리티 협력업체 인증서 등 협력 확인 자료
- ④ 대한전기협회의 원자력 부문 KEPIC 인증서
- ⑤ 원자력산업협회의 원전기업 인증서

#### 6. 사업 추진체계

- 사업총괄 : 기후에너지환경부
- 전담기관 :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
- 수행기관 : 한국원자력산업협회
- 취급은행 : 전담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시중은행



## II

## 금융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

### 1. 지원 절차

구분	추진절차	비 고	추진일정
공고 · 접수	· 사업공고 -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	기후에너지환경부	2月
	· 사전 상담	신청자 ↔ 취급은행	-
	· 신청·접수 -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이메일 제출 (finance@kaif.or.kr)	신청자 → 수행기관	2月
지원 대상 선정	· 적합성 검토 및 평가위원회	수행기관	3月
	· 심의위원회 - 지원 확정 및 선정 통보	전담기관 (수행기관→사업자, 전담기관→취급은행)	3月
자금 신청 · 심사 · 대출	· 대출 신청·심사·승인 - 선정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대출신청 필수 - 취급은행 담보심사 탈락시 대출 불가	(신청) 사업자→취급은행 (심사·승인) 취급은행	3月~
	· 자금 대출 - 선정통보서 발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추천 자금의 10% 이상 인출 필수	취급은행 → 사업자	3月~
사업 수행 · 성과 조사	· 사업수행 - 진도점검보고서, 완료보고서, 성과보고	사업자	-
	· 중간 진도점검 * 수행관리 및 애로사항 지원 등	수행기관	-
	· 대출금 상환	사업자 → 취급은행 → 전담기관	-
	· 완료보고	사업자 → 수행기관	-
	· 성과 조사 - 자금사용 완료 후, 3년간 성과조사	수행기관 → 사업자	-

\* 상기 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# 2. 평가 기준

#### 가. 적합성 검토

- 수행기관이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
  - 공고내용과의 부합성,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, 참여제한 여부,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등을 검토(라.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고)
- 수행기관은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## 나. 기술성 평가

수행기관이 신청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량 평가

- 신청기업의 기술·경영 역량, 파급효과, 자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순위\* 추천

\* 평가는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, 과제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중소기업, 중견기업, 연내 대출실행 가능성이 우수한 기업 순으로 추천

평가항목

항 목		심사기준	배점
1	기술 경영 역량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 목표의 명확성,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, 추진체계 및 전략, 사업수행 역량, 기술경쟁력, 전담조직 및 인력 보유 현황 등 평가	40
2	예산계획 적정성	<input type="checkbox"/> 소요자금 산출내역의 적정성, 자금조달 계획 등 평가	20
3	연내 대출실행 가능성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계획 관련 향후 진행일정의 구체성, 관련 계약체결 등 진행단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내 대출실행 가능성 평가	20
4	파급효과	<input type="checkbox"/> 매출증대, 고용창출, 수입대체, 기술확보 등 사업 추진에 따른 예상 성과 평가	10
5	증빙서류 적정성	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계획,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의 적정성 평가	10
가점 (총 5점 이내)	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	3
		<input type="checkbox"/> 중견기업	1
		<input type="checkbox"/> 산업통상부의 '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' 선정기업	2
		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'원전기업 인증'을 취득한 기업 중 최상위 등급의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	1

수행기관은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 기업(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 합산)을 지원 가능 기업으로 분류하고, 고득점순으로 전담기관에 자금추천 진행

## 다. 평가결과 확정

전담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자금추천 규모·순위 확정

- 전담기관은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지원 가능한 예산 범위 내 취급은행에 자금을 추천하고, 수행기관은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에게 선정 통보서를 교부

## 라. 대출신청 및 실행

수행기관으로부터 자금추천 대상 선정 통보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\*을 신청해야 함

\* 채권 및 담보, 보증 등 필요

-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대출해야 함
  -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상품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,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,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음 (특히 대출실행 시 대출금에서 수입인지대금 수납 불가)
  - 사업자는 선정통보서 교부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 대출승인 자금의 10% 이상을 인출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최초 인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\*을 거쳐 30영업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
    - \* 최초 인출기한 5영업일 전까지 사유와 연장 기간을 기재하여 수행기관 통보 및 전담 기관에 서면 연장 신청 필요

#### 마. 사업 관리

- 사업자는 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30일 내 수행기관에게 결과보고서 및 자금 사용 내역 제출
  -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은 필요한 경우, 현장실태조사 및 면담조사와 총괄책임자의 참석·설명을 요청할 수 있음
    - \* 관리 규정·지침에 의거 대출금 회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 후속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

#### 바. 지원제외 처리 기준

- 아래의 경우에는 용자지원 대상에서 제외
  -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  - “한계기업”에 해당되는 경우
    - \* “한계기업”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. 이때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‘BBB’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.
  - 본 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
  -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등에 의하여 참여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
  -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
  -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한 내역에 대해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
  -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용자금 또는 사업비가 있는 경우
    - \* 단,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용자 신청 가능
  - 기타 금융 지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

### Ⅲ 사업비 산정기준

#### 1. 시설자금

- (용도)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시설(설비, 건축구조물 등을 포함)을 설치·구매·이전·개체·보완 또는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

#### <시설자금 인정 범위>

구분	내용
설비와 장치의 제작, 설치, 구매 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차량운반구(화물차, 지게차 등) 구매, 개조, 주문제작 비용</li> <li>기존 시설(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)의 개조, 변경 및 증설 및 이에 수반하는 필수적인 토목공사 비용</li> <li>신규 시설(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)의 구매(경매 낙찰 포함), 제작, 설치 및 이에 수반하는 필수적인 토목공사 비용</li> <li>자체 설계·제작하는 시설에 대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자체제작 원료, 재료의 상세내역(모델명, 구매처, 금액 등) 서류와 제작 완성품과 유사한 기성품 시설의 견적서, 사양서 또는 팜플렛을 제출</li> <li>생산, 정보화 촉진, 유통·물류,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</li> </ul>
건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장동, 사무동, 기숙사, 창고, 아파트형 공장 등의 건축비</li> <li>경매 매입 인정</li> <li>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건축 자금</li> </ul>
설계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축과 시설물에 대한 설계비용</li> </ul>
중고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 매입 비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매입금액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를 필수로 첨부 (1곳)</li> <li>단, 매입가 1억원 이하의 소액, 소규모 설비 등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, 동일 또는 유사 시설에 대한 2(둘) 이상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</li> <li>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(경·공매 포함) *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</li> </ul>

#### □ 불인정 사항

- 시설물 설치, 공사에 사전 인·허가,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 취득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
- 토지매입비(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이 취득세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, 철거비용도 토지매입비에 포함), 부가가치세 비용
- 임대·매각 등 자체 사용·운용이 아닌 수익 목적의 시설

## 2. 운전자금

- (용도)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구입, 제품 생산, 시장 개척, 인건비 등 기업의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
  -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소요자금을 비목별로 검토·조정한 후 지원 금액은 조정된 소요금액의 지원 비율 내에서 산정하되(백만 원 미만 절사), 당해 사업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
### <운전자금 인정 범위>

구분	내용
기업경영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부자재 구입(공급가액만 인정), 제품의 생산, 시장 개척, 기술 개발, 인건비, 대출금 상환,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건비(사업자부담의 사회보험료 포함), 원료·재료 구입비, 전기료 등 각종 연료비, 차량운반구 유류비 등</li> <li>- 공장, 창고 임차 보증금과 정기 임차료, 장치·설비·차량운반구 수리비</li> <li>- 국내·외 제품판매를 위한 포장비, 납품 운반·수송 비용 등</li> </ul> </li> <li>• 원전 관련 국내·외 인증 및 특허 획득·유지에 필요한 비용</li> <li>• 해외 현지 사업장(제품 사후관리, 판매·영업 관련 지사) 운영 관련 비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지 파견 임직원의 인건비와 노무비, 현지 사업소 임차료</li> </ul> </li> <li>• 국내·외 영업, 마케팅, 광고·홍보 관련 비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·외 박람회, 전시회 참가에 따른 참가비, 부스·행사장 설치 등</li> <li>- 국내 직영 판매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(보증금, 임차료, 인테리어 비용)</li> </ul> </li> <li>• 국내·외 원자력발전 기술 이전·도입(양수, 매입, 실시권 등)에 소요되는 비용</li> </ul>
약속어음 감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약속어음 폐지·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</li> </ul>
시운전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(시설자금의 50% 이내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</li> </ul> </li> </ul>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</li> </ul>

### □ 불인정 사항

- 국세, 지방세, 관세, 부가세, 수입인지대금 등 세금 및 대출이자
- 승용차량(차종, 세단, SUV 등 형태 불문) 유류비
- 각종 복리후생비, 식대 및 행사비용, 유·무선통신비, 사무실 인테리어 및 사무비품 비용, 그 외 지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
- 해외 현지 사업장의 사무 비품, 식대 등 소모품 비용과 현지인 인건비 불가
- 항공·선박 운임 : 해외 박람회 등 행사 참관과 시장조사 등 인력만의 출장 비용은 불인정. 단, 수출·수주 계약 체결, 기공식의 출장 운임은 지원 가능

## IV

### 기타 유의사항

- 사업자는 대출금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자금의 경우 별도 계좌를 개설 하여 모든 지출 내역이 통장에 표기되도록 관리해야 함
- 사업자는 매월 25일 원리금을 취급 은행에 상환하고, 취급 은행은 3월, 6월, 9월, 12월의 25일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융자금을 상환해야 함
  - 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, 공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하며, 융자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전 상환된 경우에는 회수일 또는 상환일에 납입하여야 한다.
- 사업 신청 관계자(기업, 대표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
- 기타 지원취소, 자금회수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[V. 근거법령 및 규정] 적용

## V

### 근거법령 및 규정

#### 1. 근거법령

- 「전기사업법」 및 동법 시행령

#### 2. 관련규정

- 「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규정」 및 「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」

## VI

##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1. 신청기한 : 2026. 3. 13. (금) 18:00까지(이메일 접수만 가능)
2. 신청방법 :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이메일(finance@kaif.or.kr) 접수를 통해 신청·접수  
 \* 한국원자력산업협회 금융지원팀 (02-6257-2543 / 02-6953-2043)

### 3. 신청 시 유의사항

- 접수 마감일 마감시까지 ‘제출하지 않는 경우’ 접수 불가
-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

### 4. 제출방법 및 목록

- 제출방법

아래 기준에 따라 총 5개 파일을 제출 하기 안내에 따라 한글파일과 PDF 파일로 제출하며, 발표자료는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.

- ① 신청 및 증빙서류 : 한글(HWP) 1부, PDF 1부
- ② 로마자 II : 한글(HWP) 1부, PDF 1부
- ③ 발표자료 : PDF 1부

- 제출서류 목록

구분	순서	서류명	양식
I	1	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신청서	제공
	2-①	시설자금 사업계획서	* 사업명 상세기재 필요 '원전생태계 금융지원사업' X
	2-②	운전자금 사업계획서	
	3	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('22, '23, '24) *외부감사 대상인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	기업
II	4	확약서	제공
	5	취급은행 대출심사가 가능 사전 확인서	제공
	6	개인·기업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제공
	7	청렴이행서약서	제공
	8	사업자등록증 (사업자등록증명 X)	기업
	9	등기사항 전부증명서 (말소사항 포함, 제출용)	기업
	10	중소(벤처)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	기업
III	발표자료	11 발표자료	기업

- \* 서류 양식은 사업공고문 붙임2. 제출서류 서식을 참고하되, 모든 구비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미제출로 간주
- \*\* 발표자료는 자유양식으로 사업계획서 목차에 따라 자율 제작하며, 발표자료 미제출 시 발표평가는 사업 계획서(문서)로 진행

## VII 문의처

구분(담당부서)		연락처	문의 내용
전담기관	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(원전산업실)	02-3469-8411	사업 문의
수행기관	한국원자력산업협회 (금융지원팀)	02-6257-2543	신청자격/접수/평가 문의

□ 대출심사 가능 사전확인서 발급기관(취급은행) 목록 및 연락처

은행명	대표전화번호	은행명	대표전화번호
우리은행	1588-5000	하나은행	1588-1111
신한은행	1599-8000	한국산업은행	1588-1500
국민은행	1588-9999	부산은행	1588-6200
기업은행	1588-2588	경남은행	1588-8585
농협은행	1588-2100		

\* 취급은행 중 주거래은행이 있는 경우, 해당 지점에서 상담 후 사전확인서 발급

\*\* 취급은행 중 주거래은행이 없는 경우, 신청기업 본사 소재지 인근 지점에서 상담 후 사전확인서 발급

붙임 1. 「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」 운영지침

붙임 2. 「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」 지원기업 제출서류 서식. 끝.